



제391회국회(정기회)
제 4 차 교 육 위 원 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급여제한을 위한 심의기구 준용규정 정비 〉

■ 유기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271호)

■ 정찬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48호)

2021.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재유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공무원연금법」 준용규정 정비	4
2. 부칙	8

I. 제안경위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271호>

1. 발 의 자 : 유기홍 · 박찬대 · 강민정 · 이수진 · 서동용 · 이탄희 ·
이형석 · 조승래 · 천준호 · 임호선 의원(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8. 27.

3. 회부연월일 : 2021. 8. 30.

<정찬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548호>

1. 발 의 자 : 정찬민 · 배준영 · 서정숙 · 안병길 · 이종성 · 이주환 ·
임이자 · 곽상도 · 지성호 · 태영호 의원(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9. 14.

3. 회부연월일 : 2021.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271호>

제안이유

부양·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법률 제17752호, 2020.12.22. 개정, 2021.6.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준용조항인 사학연금법 제42조를 공단 규정에 맞게 규정 정비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양·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연금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급여제한을 위한 심의기구 용어를 변경함(안 제42조제1항).

<정찬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548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여 급여 지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법률 제17752호, 2020. 12. 11.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현행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공무원연금법」 준용 규정 정비

개정안들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7752호, 2020.12.22. 개정, 2021. 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 행	유기홍의원안, 정찬민의원안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 ----- ----- ----- ----- ----- ----- ----- ----- ----- ----- -----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
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
심의회”로 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는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여 급여 지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²⁾이 신설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³⁾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

1) 「공무원연금법」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의회”⁴⁾를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⁵⁾로 보는 것으로 준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안 제42조제1항).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 가.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 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 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4조(급여의 결정)

-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부칙

시행일과 관련하여 유기홍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정찬민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부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유기홍의원안	정찬민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한 날</u>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두 개정안의 부칙 제2조는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7752호, 2020.12.22. 개정, 2021.6.23. 시행)의 부칙 제2조6)에 맞추어 적용례를

6)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7752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연금법」이 이미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유기홍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184